

[별지 제7호] <개정 2016. 12. 6.>

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

문서번호 BNK투증인사26-3

2026. 1. 7.

수 신 금융감독원장

참 조 자본시장제도팀

제 목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2025. 12. 30. 개최된 이사회에서 불임과 같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 및 해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- 붙임 : 1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 내용 1부.
2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 1부. 끝.

(주)BNK투자증권 대표이사 (인)



작성 자 : 김 대 용(파트너)

전화번호 : 02-3215-7514

(붙임 1)

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(또는 해임) 내용

1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

성명 (한자)	직위	임원 여부	주민등록 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임기 (만료일)	업무 범위	겸직 직위 및 업무	주요경력 ¹⁾	자격 요건 확인 결과
염수원 (廉受原)	전무	여	681208	2026.01.01	2026.01.01.~ 2027.12.31.	준법 감시인	-	-15.01 경남은행 부장 -24.01 경남은행 준법감시인 전무 (現)	적격
윤석준 (尹錫俊)	전무	여	690220	2026.01.01	2026.01.01.~ 2027.12.31.	리스크 관리 본부	-	-22.01 부산은행 감사부장 -23.04 BNK금융지주 그룹리스크관리부문장 상무 -25.04 부산은행 리스크관리그룹장 상무(現)	적격

주 1) 주요 경력란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학력 또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과 최근 5년간의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

2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해임

성명 (한자)	주민등록번호 (앞의 6자리)	선임일	해임일	해임사유 ¹⁾	비고 ²⁾
백수동 (白洙童)	650223	2024.01.01	2025.12.31	임기만료 (2025.12.31)	
조현일 (趙炫一)	710211	2025.01.01	2026.12.31	중도사임 (2025.12.31)	

주 1) 해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이사회 결의서, 사직서 사본 등) 첨부

2) 향후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일정 및 절차 등

(붙임 2)

준법감시인 선임 심사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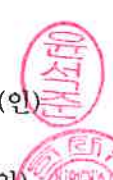
성명 (한자)	염수원 (廉受原)	직위	전무	
심사항목		심사결과		비고
1.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	“해당사항 없음”		
2.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각 목(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	“해당사항 없음”		
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	“해당사항 없음”		
종합의견 임원결격요건(준법감시인 결격요건)에 해당사항이 없으며, 경력 등을 고려할 때 (주)BNK투자증권 준법감시인으로서 적임자로 사료 됨				
년 월 일 (주)BN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염수원 (인) (주)BNK투자증권 대표이사 신명호 (인)				

*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
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

성 명 (한 자)	윤석준 (尹錫俊)	직 위	전무
심 사 항 목		심 사 결 과	비 고
1. 법 제2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,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의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)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)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		“해당사항 없음”	
2.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*. 다만,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8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.		“해당사항 없음”	
3.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		“해당사항 없음”	
종 합 의 건 임원결격요건(위험관리책임자 결격요건)에 해당사항이 없으며, 경력 등을 고려할 때 (주)BNK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로서 적임자로 사료 됨			
년 월 일 (주)BNK투자증권 위험관리책임자 윤 석 준 (인) (주)BNK투자증권 대 표 이 사 신 명 호 (인)  			

*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,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

【첨부서류】

1. 이사회 결의서
2.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(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)
3.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그밖의 감독·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(감봉요구)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인사기록카드, 감독기관·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
4. 법 제2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(경력증명서 등)
5.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위험관리책임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)
6.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)